


Fi 자산관리통장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로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**.

구 분	내 용										
상품명	• Fi 자산관리통장										
가입대상	• 개인 (1인 1계좌)									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									
가입채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, 모바일뱅킹(Fi디지털뱅크APP, SB톡톡*) •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시, 개설목적 증빙서류 지참 필수 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월 이자지급 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- 최초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 적용 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										
이자율 (24.07.01 현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 •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,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부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. •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가 적용되며, 3억원 이상인 경우 잔액 전체에 3억원 이상 구간 금리가 적용됩니다.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5 1597 1461 1747"> <thead> <tr> <th>(연,세전)</th> <th>대면 (영업점)</th> <th>비대면 (Fi_파이,SB톡톡*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억원 미만</td> <td>2.60%</td> <td>2.60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이상</td> <td>3.70%</td> <td>3.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(연,세전)	대면 (영업점)	비대면 (Fi_파이,SB톡톡*)	3억원 미만	2.60%	2.60%	3억원 이상	3.70%	3.70%
(연,세전)	대면 (영업점)	비대면 (Fi_파이,SB톡톡*)									
3억원 미만	2.60%	2.60%									
3억원 이상	3.70%	3.70%				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										

구 분	내 용
원천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거래중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래중지계좌 편입 <p>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고,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-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고,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-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고,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연계·제휴 서비스	<p>[혜택1] 기념일 서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비스 제공 개시일 : 2023년 6월 1일 ▶ 대상 : 기념일이 속한 월 직전 3개월간 「Fi 자산관리통장」 평잔 1억원 이상인 고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잔 산출 상품 : Fi 자산관리통장 • 평잔 산출 기간 : 기념일(생일)이 속한 월 직전 3개월 (기념일로부터 3개월전 월의 1일 ~ 직전월 말일) • 서비스 제공일 : 기념일(생일)이 속한 월중 제공 • 예시 : 기념일이 6월15일인 경우, 직전3개월 (3월1일~5월31일) 간 해당상품의 평잔이 1억원 이상일 시 6월중 선물 자동발송 ▶ 서비스 이용방법 : 기념일이 속한 월중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발송 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념일 서비스는 최대 연1회 제공되며, 모바일 기프트콘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발송됩니다. • 기념일은 생일(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준)로 설정되며 변경이 불가합니다. <p>[혜택2] 명절(설/추석) 서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비스 개시일 : 2023년 9월 29일 (23년 추석명절) ▶ 대상 : 명절 당일이 속한 월 직전 3개월간 「Fi 자산관리통장」 평잔 2억원 이상인 고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잔 산출 상품 : Fi 자산관리통장 • 평잔 산출 기간 : 명절당일이 속한 월 직전 3개월 (명절당일로부터 3개월전 월의 1일 ~ 직전월 말일) • 서비스 제공일 : 명절당일(설/추석)이 속한 월중 제공 • 예시 : 23년 추석명절 당일 (9월29일) 기준으로, 직전3개월 (6월1일~8월31일) 간 해당상품의 평잔이 2억원 이상일 시 9월중 선물 자동발송 ▶ 서비스 이용방법 : 명절당일(설/추석)이 속한 월중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발송 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절 서비스는 최대 연2회 제공되며, 모바일 기프트콘(또는 택배)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발송됩니다. • 택배로 발송되는 경우 택배사 사정에 따라 수령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p>※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념일 서비스 및 명절 서비스 제공이 동일한 월에 해당되는 경우, 기념일 서비스는 자동으로 익월에 적용되어 선물이 발송됩니다. • 비과세로 분류되지 않는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관련 세액은 당행이 원천징수하며, 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 • 기타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
